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531호
------------	-------

제출년월일 : 2004. 7.
제 출 자 : 김 포 시 장

□ 개정구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눈썰매장에서 사계절 썰매장으로의 시설 전환에 따른 관리·운영상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여 개정하고자 함
- 5세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시설의 사용기준 및 단체에 대한 세부기준 조정으로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의 제명중 “눈썰매장”을 “사계절썰매장”으로 전환
- 나. 소인의 기준을 “초등학교학생과 5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에서 “초등학교학생과 3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로 구분(제2조제4호)
- 다. 단체의 구분을 “1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구분(제2조제7호)

□ 개 정 조 레 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영유아보육법 제2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입법예고 2004. 6.17. ~ 2004. 7. 6. 의견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김포시조례 제 호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중 “눈썰매장”을 “사계절썰매장”으로 한다.

제1조중 “눈썰매장시설”을 “사계절썰매장시설”로 한다.

제2조제4호중 “5세 이상 12세”를 “3세 이상 12세”로 한다.

제2조제7호중 “10인”을 “20인”으로 한다.

제6조제2호중 “30인이상”을 “50인이상 일시에”로 한다.

제6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평일(국공휴일·주말제외) 200인이상 일시에 이용 시 사용료의 4할을 감면할 수 있다.
5. 수련원 숙박 이용단체에 한하여 시설 이용 시 사용료의 4할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3세 미만의 유아”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 · 과 · 소		자치지원과
입 안 자	실 · 과 · 소장	자치지원과장
	성 명	이 돈 수
	담 당	체 육 담 당
	성 명	주 동 규
	담 당 자	김 흥 수
성명 · 전화		(행정 2582)

【별표 1】 사계절 썰매장시설의 위치와 종류

위 치	종 류	비 고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산82-1와1필지	<input type="radio"/> 사계절 썰매장 <input type="radio"/> 관리동(휴게실등) <input type="radio"/> 주차장	

【별표 2】 사용료

시설명	기준	요금	비고
사계절 썰매장	대인	7,000원	1회 입장기준 (당일 유효)
	청소년	5,000원	
	소인	4,000원	

신 · 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김포시눈썹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u>눈썹매장시설</u>(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 운영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김포시사계절썹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p> <p>제1조(목적) -----</p> <p>-- <u>사계절썹매장시설</u> -----</p> <p>-----</p> <p>-----</p> <p>-----</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3 (생략)</p> <p>4. “소인”이라 함은 초등학교학생과 <u>5세 이상 12세</u> 이하의 자를 말한다</p> <p>5~6 (생략)</p> <p>7. “단체”라 함은 단체인솔자에 의해 <u>10인</u> 이상이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p> <p>8. (생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p> <p>-----</p> <p>1~3 (현행과 같음)</p> <p>4. ----- <u>3세 이상 12세</u> -----</p> <p>5~6 (생략)</p> <p>7. ----- <u>20인</u> -----</p> <p>-----</p> <p>8. (현행과 같음)</p>
<p>제6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요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p> <p>1. (생략)</p> <p>2. 평일(국공휴일 · 주말제외) <u>30인이상</u> 이용 시 사용료의 3할을 감면할 수 있다.</p> <p>3. (생략)</p> <p>4. <신설></p>	<p>제6조(사용료의 감면) -----</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 <u>50인이상 일시에</u> -----</p> <p>3. (현행과 같음)</p> <p>4. 평일(국공휴일 · 주말제외) <u>200인이상 일시에</u> 이용 시 사용료의 4할을 감면할 수 있다</p> <p>5. 수련원 숙박 이용단체에 대하여 시설 이용 시 사용료의 4할을 감면할 수 있다.</p>
<p>5.<신설></p>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임장의 제한 및 퇴장)</p> <p>① (생략) 1. (생략) 2. <u>5세 미만의 유아</u> 3~4 (생략) ② (생략)</p> <p>【별표 1】 눈 썰매장시설의 위치와 종류</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위 치</th><th style="text-align: center;">종 류</th><th style="text-align: center;">비 고</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산82-1번지</td><td style="text-align: center;"> <input type="radio"/> <u>눈 썰매장</u> <input type="radio"/> 관리동(휴게실등) <input type="radio"/> 주차장 </td><td></td></tr> </tbody> </table> <p>【별표 2】 사 용 료</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시 설 명</th><th style="text-align: center;">기 준</th><th style="text-align: center;">요 금</th><th style="text-align: center;">비 고</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u>눈 썰매장</u></td><td style="text-align: center;">대 인</td><td style="text-align: center;">7,000원</td><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1회 임장기준 (당일 유효)</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td><td style="text-align: center;">5,000원</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 인</td><td style="text-align: center;">4,000원</td></tr> </tbody> </table>	위 치	종 류	비 고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산82-1번지	<input type="radio"/> <u>눈 썰매장</u> <input type="radio"/> 관리동(휴게실등) <input type="radio"/> 주차장		시 설 명	기 준	요 금	비 고	<u>눈 썰매장</u>	대 인	7,000원	1회 임장기준 (당일 유효)	청소년	5,000원	소 인	4,000원	<p>제14조(임장의 제한 및 퇴장)</p> <p>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3세 미만의 유아</u>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별표 1】 사계절 썰매장시설-----</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위 치</th><th style="text-align: center;">종 류</th><th style="text-align: center;">비 고</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산82-1번지</td><td style="text-align: center;"> <input type="radio"/> <u>사계절 썰매장</u> <input type="radio"/> 관리동(휴게실등) <input type="radio"/> 주차장 </td><td></td></tr> </tbody> </table> <p>【별표 2】 사 용 료</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시 설 명</th><th style="text-align: center;">기 준</th><th style="text-align: center;">요 금</th><th style="text-align: center;">비 고</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u>사계절 썰매장</u></td><td style="text-align: center;">대 인</td><td style="text-align: center;">7,000원</td><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1회 임장기준 (당일 유효)</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td><td style="text-align: center;">5,000원</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 인</td><td style="text-align: center;">4,000원</td></tr> </tbody> </table>	위 치	종 류	비 고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산82-1번지	<input type="radio"/> <u>사계절 썰매장</u> <input type="radio"/> 관리동(휴게실등) <input type="radio"/> 주차장		시 설 명	기 준	요 금	비 고	<u>사계절 썰매장</u>	대 인	7,000원	1회 임장기준 (당일 유효)	청소년	5,000원	소 인	4,000원
위 치	종 류	비 고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산82-1번지	<input type="radio"/> <u>눈 썰매장</u> <input type="radio"/> 관리동(휴게실등) <input type="radio"/> 주차장																																				
시 설 명	기 준	요 금	비 고																																		
<u>눈 썰매장</u>	대 인	7,000원	1회 임장기준 (당일 유효)																																		
	청소년	5,000원																																			
	소 인	4,000원																																			
위 치	종 류	비 고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산82-1번지	<input type="radio"/> <u>사계절 썰매장</u> <input type="radio"/> 관리동(휴게실등) <input type="radio"/> 주차장																																				
시 설 명	기 준	요 금	비 고																																		
<u>사계절 썰매장</u>	대 인	7,000원	1회 임장기준 (당일 유효)																																		
	청소년	5,000원																																			
	소 인	4,000원																																			

관 계 법령 발췌 서

□ 영유아보육법 제2조

第2條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라 함은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 안 번 호	531
------------	-----

제안년월일 : 2004년 7월 16일

제 안 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문수

1. 수정이유

- 사계절썰매장 이용 시 사용료기준을 현재 소인, 청소년, 대인의 기준으로 분리하여 차등 요금을 징수해 오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소인의 기준을 유아까지 강화하여 징수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현실에 맞지 않고 오히려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이를 완화 적용하고 또한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군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사용료 면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골자

- 소인의 기준을 “초등학교학생과 3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에서 “초등학교학생과 만 3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로 구분(제2조 제4호)
-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군인으로써 신분이 증명되는 자에 대해서 사용료 면제 근거 신설(안 제5조 제3호)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 한수정안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4호 중 “3세 이상 12세”를 “만 3세 이상 12세”로 한다.

안 제5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군인으로써 신분이 증명되는 자

안 제14조 제1항 제2호 “3세 미만의 유아”를 “만 3세 미만의 유아”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3. (생략)</p> <p>4. "소인"이라 함은 초등학교학생과 <u>5세 이상 12세</u> 이하의 자를 말한다</p> <p>5~6. (생략)</p> <p>7. "단체"라 함은 단체인출자에 의해 <u>10인</u> 이상이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p> <p>8. (생략)</p> <p>제5조 (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자</p> <p>2. 관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단체이용시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임이 증명되는 학생</p> <p>제14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p> <p>① (생략)</p> <p>1. (생략)</p> <p>2. <u>5세 미만의 유아</u></p> <p>3~4 (생략)</p> <p>② (생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 ----- --- 1~3. (현행과 같음) 4. ----- <u>3세 이상 12세</u> ----- 5~6. (현행과 같음) 7. ----- <u>20인</u> ----- --- 8.(현행과 같음)</p> <p>제5조(사용료의 면제)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u>3. (신설)</u></p> <p>제14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p> <p>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u>2. 3세 미만의 유아</u>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2조(용어의 정의) ----- ----- --- 1~3. (개정안과 같음) 4. ----- <u>만 3세 이상 12세</u> ----- 5~6. (개정안과 같음) 7. (개정안과 같음) 8. (개정안과 같음)</p> <p>제5조(사용료의 면제) ----- ----- -----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u>3.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군인으로써 신분이 증명되는 자</u></p> <p>제14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p> <p>①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u>2. 만 3세 미만의 유아</u> 3~4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p>